

[별지 제11호 서식]

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				
신청 대상자 ¹	성명 (한자 :)			
	등록기준지 ²			
	※ 뒷면 작성방법 5.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
주민등록번호 -				
신청내용	1. 일반증명서		2. 상세증명서	
	① 가족관계증명서()통 ② 기본증명서()통 ③ 혼인관계증명서()통 ④ 입양관계증명서()통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)통		① 가족관계증명서()통 ② 기본증명서()통 ③ 혼인관계증명서()통 ④ 입양관계증명서()통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)통	
	3. 특정증명서 ³ ①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후견)()통			
	4. 종전 「호적법」에 따른 제적 본적 : _____ 호주 : _____ 대상자 : _____		① 제적등본()통 ② 제적초본()통 ③ 제적부열람()건	
	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(뒷부분6자리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	공개 신청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1.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, 양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
	청구사유			
소명자료				
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⁴			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	
신청인	성명	⑨ 또는 서명	주민등록번호 ⁵	
	주소	신청인 자격 의 휴대전화번호 등		
위임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⁵	-	
	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(위임장은 별도 첨부)			
20 년 월 일				
○○시(구) · 읍 · 면장 귀하				
* 수수료	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10엔, 제적초본 1통당 110엔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(뒷면 참조)			
1.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"별지와 같음"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(서명)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.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,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 3.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·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4.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,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. 5.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※ 법 제117조 3호 : 제14조 제1항·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법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 ※ 발급관서가 "시"인 경우에는 "구"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.				

작성방법

(뒤쪽)

1.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,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국제운전면허증,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)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
- ② 소송, 비송, 민사집행,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
-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
-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(후견인, 유언집행자, 상속재산관리인, 부재자재산관리인)
- ⑤ 채권·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-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- ⑦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

*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,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,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예) 청구사유 : 가사소송관련(○○○의 ○○사건)법원제출용, 신청인의 자격 : 본인의 부, ○○○의 대리인

2.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신고서류의 열람 포함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-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
-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·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
- ③ 혼인당사자가 「민법」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
- ④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
- ⑤ 「민법」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
- ⑥ 「입양특례법」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
-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
-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, 비송, 민사집행·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
- ⑨ 채권·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-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
-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·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

3.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,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- ① 시(구)·읍·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
-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, 양부모, 배우자, 자녀인 경우
- ③ 시(구)·읍·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, 비송, 민사집행·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(예 : 법원의 재판서, 보정명령서 등)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
- ④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)이,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(예: 공문서, 재결서 등)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

*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①,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.

4. 위 3.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.

- ① 종전 「호적법 시행규칙」 부칙(2004. 10. 18)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
- ② 종전 「호적법」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

5. 아래의 경우 시(구)·읍·면·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,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위 제1.의 ①,②,③,④,⑥,⑦ 및 제2의 ⑧,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

※수수료 면제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
-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
- ③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⑤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
- ⑥ 「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
- ⑦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⑧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⑨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
- ⑩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